

第52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市民福祉委員會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1996年5月21日(火) 午前10時

場 所：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健康生活實踐協議會條例案審查의件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健康生活實踐協議會條例案審查의件(繼續)(城北區廳長 提出) 1面

(12時03分 開議)

○委員長 權赫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健康生活實踐協議會條例
案審查의件(繼續)(城北區廳長 提出)

(12時03分)

○委員長 權赫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심
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제1차 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
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金珉奭委員 토론 다 끝났는데, 이것을 아
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결의할 것이나 아
니면 안위원님 말씀대로 보류할 것이나 그
두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
안되면 거수로 하든지.

○委員長 權赫驥 본 안건에 대해서

○安敦洙委員 토론 제가 할게요.

○委員長 權赫驥 안돈수위원님 토론하십시오.

○安敦洙委員 아까도 얘기를 했었고, 어제
도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10조를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
의 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

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보건소장님이 말
씀하실때는 지금까지 꼭 없었던 사항이고
또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자문기관으로써의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급해가지고 추경에 반영
을 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것이
'95년도서부터 해왔던 것이면 이렇게 급한
것 같으면 '96년도 본 예산에서부터 이것이
시행내지는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95년 1월 5일부터 거론이 되어가지고 '95
년 9월 1일 대통령령으로 내려왔고, '95년
9월 10일 복지부 장관명의로 내려왔는데
굳이 너무 급한 것 같으면 '96년 본예산서
부터 거론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7년 본예산부터 해도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질이 없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赫驥 그러니까 반대의견이십니
까?

○安敦洙委員 예. 지금 조례안을 오늘 승인
내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치않다 이런 얘
기입니다. 더 이따 해도 된다.

○委員長 權赫驥 예, 반대토론. 그다음에
찬성토론하실 분, 이용섭위원님.

○李龍燮委員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이 우선하
기도 하는데, 내년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한
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우
리가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아마 3/4분

기 아니면 4/4분기 한번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예산은 크지도 않을 뿐더러 기히 이것을 올랐을 것을 연말에 할 것을 한 5개월 전에 하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에 해당된다 하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을 찬성합니다.

○委員長 權赫驥 또 반대토론 있습니까? 찬성토론을 했는데 반대토론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반대하시는 분

○安敦洙委員 찬성이 많으니까 찬성으로 하죠.

○朴景錫委員 그런데 아까 예산에서 회의비 지출하고 지출하지 않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 權赫驥 가만히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성 6분, 9분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계시네요. 반대 토론은 다 했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안계시네요.

○安敦洙委員 찬성한 사람이 많으니까 안해도 되는 거예요.

○委員長 權赫驥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표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安敦洙委員 잠깐만요, 아까 박경석위원님이 표결하는 과정에서 수당을 지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질문했는데, 가만있어보라고 하고 조례를 지금 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백하게 답변을.

○委員長 權赫驥 표결할 적에는 질의나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액 그것을 그 이후의 얘기니까 진행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金榮植委員 맞습니다. 회의진행상 그래요.

○安敦洙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는 원안대로 하고 예산은

○委員長 權赫驥 지금 표결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성북구건강생활 실천협의회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1分 散會)

○出席委員 11人

權赫驥	金南孝	金光植
朴景錫	安敦洙	吳榮作
李龍燮	任泰根	洪性濤

○缺席委員 2人

李大一	崔哲模
-----	-----

○參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崔石根
------	-----